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9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일자 : 2015. 12. 17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범사업의 시행 추이를 보며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보조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(안 제8조),
- 안 제10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와 안 제12조(협회의 설립)를 각각 삭제함.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자로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안 제10조 및 안 제12조는 각각 삭제하고, 안 제11조는 제10조로 하며, 안 제13조는 제11조로 하고, 안 제14조는 제12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공사비용 지원)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<u>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자 지원</u> <u>2.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지원</u> 	<p>제8조(공사비용 지원) ----- ----- ----- <u>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자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~2. <삭 제></u></p>
<p>제10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집수리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주택점검 서비스 제공</u> <u>2. 집수리 관련 각종 공구 임대</u> <u>3. 집수리 지원제도 안내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</u> <u>4. 집수리업체 정보 제공</u> <u>5. 그 밖에 집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	<p><u><삭 제></u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③ <u>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SH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허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자치구 또는 SH공사에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
<p><u>제11조(우수 집수리업체 지원) (생략)</u></p>	<p><u>제10조(우수 집수리업체 지원) (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<u>제12조(협회의 설립) ① 집수리업체는 효율적인 주택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업의 전문화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수리업체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(이하 "협회"라 한다)</u></p> <p><u>② 협회 설립 관련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3조(재원) (생략)</u></p>	<p><u>제11조(재원) (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<u>제1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(생략)</u></p>	<p><u>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(제정안과 같음)</u></p>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,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저층주택”이란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단,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)을 말한다.
2. “저층주거지”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.
3. “집수리”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4. “집수리업체”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(단,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)
5. “관리주체”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 등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저층주택 거주민은 누구나 쉽게 집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저층주택 관련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조(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5.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8.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(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벌칙사항 포함)
9.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

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제5조(저층주택의 점검) ①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시장은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수, 결로, 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
2. 단열, 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

3. 균열, 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
4. 기타 저층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

제6조(집수리 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·운영
2.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
3.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
4.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
5.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7조(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또는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공사비용 지원)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자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)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 성능향상과 유지·관리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의 신축에서부터 집수리 시기와 범위, 내용과 비용, 공사업체 정보, 권리관계 변화 등 주택관리 이력제를 도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우수 집수리업체 지원)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집수리업체는 제7조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에게 해당 업체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시장은 등록된 업체의 시공 사후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

상으로 인증서 발급,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, 공사비 용자 및 보조금 지원 등 행·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④ 우수 집수리업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재원)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
2. 그 밖에 차입금, 보조금 등

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